

인권정보자료실
SAe.f.7

군대를 위한

전 쟁 법

HANDBOOK
ON THE LAW OF WAR
FOR ARMED FORCES

프레드릭 드 풀리엔 지음
최영홍 · 유재풍 옮김

공 군 본 부



군대를 위한

전
쟁
법

공
군

인권정보자료실
SAe.f.7

군대를 위한

전 쟁 법

HANDBOOK ON THE LAW OF WAR FOR ARMED FORCES

프레드릭 드 물리넨 지음

최영홍 · 유재풍 옮김

공 군 본 부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1987

평안북도 김천군 김천읍 이리리

HANDBOOK
ON THE LAW OF WAR
FOR ARMED FORCES

음지 형식물 크 프크프
남음 풍우유·용남

ISBN 2-88145-009-1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1987

머 리 말

전시에 적대당사국 또는 중립국의 군대가 지켜야 할 국제법의 하나인 전쟁법은 일찍이 중세로부터 발전되어 오다가 금세기에 들어 1,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제네바협약 및 헤이그협약의 제.개정 등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특히 베트남전과 걸프전을 치르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에 있어서 제 전쟁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낮고,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법무감실에서는 1991년도에 처음으로 “무력충돌 및 공중작전에 관한 국제법”을 번역. 발간하여 장병들에게 전쟁법에 관한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국공군의 팜플렛을 번역한 것으로, 주로 항공작전과 관련된 전쟁법과 기타 국제법에 관한 것을 담고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장병들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1977년에 체결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장병이 쉽게 전쟁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군대를 위한 전쟁법”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래 국제적십자사의 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분야의 두 법무관이 번역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간한 바 있는데, 장병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이번에 법무감실에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통한 군발전을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법무감실은 앞으로도 전쟁법은 물론, 항공기소음대책법, 항공우주법, 군사행정법 등 필요한 모든 영역에 걸쳐 연구와 노력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 군의 전쟁법 보급을 위해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며 번역 및 편집작업에 참여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93. 8.

공군 법무감 대령 이희석

목 차

서론 1

전쟁법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 6

제 1 편 용어의 정의 13

 서론 13

제 1 장 전쟁법과 군대 13

 제1절 전쟁법 13

 제2절 전쟁법의 유형 15

 제3절 국가의 법적 지위 15

 제4절 전쟁법의 적용 15

 제5절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원칙 요약 19

 제6절 전쟁법상의 군대 21

 제7절 군대의 행동준칙으로서의 전쟁법 21

제 2 장 사람과 물건의 기본적인 범위 22

 제1절 전투원 23

 제2절 민간인 23

 제3절 군사목적물 24

 제4절 민간목적물 25

제 3 장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25

 제1절 목적 25

제2절	군 의무지원	26
제3절	민간 의무지원	29
제4절	종교요원과 종교물	30
제5절	민방위	30
제6절	문화재 및 예배장소에 관한 일반원칙	32
제7절	표시된 문화재	33
제8절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	35
제9절	비무장지대	35
제 4 장	전쟁희생자	36
제1절	전쟁포로	36
제2절	부상자, 병자, 난선자	37
제3절	사망자	38
제 2 편	무력충돌의 통제	
서론		39
제 1 장	충돌의 전개	39
제1절	무력충돌의 개시	39
제2절	무력충돌의 중대	40
제3절	무력충돌의 감소 및 종료	43
제 2 장	평화시의 대비조치	43
제1절	전략적 조치	43
제2절	시행조치	45
제 3 장	무력충돌중의 통제	48
제1절	전략적 조치	48
제2절	시행조치	50
제3절	기본적 보호	52

제4절	사람과 물건의 기본범위	56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57
제6절	전쟁희생자	60
제7절	보복	60
제8절	중개국의 활동	62
제9절	중립국의 의무와 활동	64
제 4 장	무력충돌후의 조치	66
제1절	정상상태의 복구	66
제2절	사람과 물건의 송환 및 석방	66
제3절	실종자 및 사망자	67
제 3 편	지휘책임	
서론		68
제 1 장	일반적 책임	68
제1절	군사작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	68
제2절	각 지휘관의 책임	70
제 2 장	전쟁법 교육훈련	70
제1절	교육훈련원칙	70
제2절	전쟁법 교관	72
제3절	주요 훈련수준 및 범위	73
제4절	참고자료	74
제 3 장	조직	75
제1절	조직원칙	75
제2절	작전 및 지리적 상황	75
제3절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76
제4절	다국적군과 그에 따른 문제	77

- 제5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79
- 제 4 장 특수한 상황..... 81**
 - 제1절 상이한 군대간의 전쟁..... 81
 - 제2절 특수한 경우의 작전..... 83
 - 제3절 특수한 보급상황 및 후송상황..... 83
- 제 4 편 지휘권 행사..... 85**
 - 서론..... 85
 - 제 1 장 임무..... 85**
 - 제 2 장 의사결정 요소..... 86**
 - 제1절 정보수집..... 86
 - 제2절 전쟁법상 요구되는 주의사항..... 87
 - 제3절 전술적 상황..... 88
 - 제4절 군사적 필요성..... 89
 - 제 3 장 의사결정..... 90**
 - 제1절 시간적 요소..... 90
 - 제2절 평가..... 91
 - 제3절 결정..... 92
 - 제4절 부하에 대한 임무부여..... 93
 - 제5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94
 - 제 4 장 시행의 통제..... 95**
 - 제1절 통제의 원칙..... 95
 - 제2절 시행중의 조정..... 95

- 제 5 편 작전행위..... 97**
 - 서론..... 97
 - 제 1 장 작전행위 일반..... 97**
 - 제1절 행위원칙..... 97
 - 제2절 필요한 정보..... 99
 - 제3절 전투수단..... 99
 - 제4절 전투방법..... 100
 - 제5절 예상되는 기망효과..... 101
 - 제6절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 103
 - 제7절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 104
 - 제8절 보호지대..... 105
 - 제9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106
 - 제 2 장 공격행위..... 107**
 - 제 3 장 방어행위..... 109**
 - 제 4 장 이동과 주둔위치..... 111**
- 제 6 편 전투행위 수칙..... 113**
 - 서론..... 113
 - 제 1 장 전투..... 114**
 - 제1절 전투원칙..... 114
 - 제2절 외국선박..... 114
 - 제3절 외국항공기..... 116
 - 제4절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 116
 -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117

제6절 보호지대.....118

제7절 전투희생자의 수색.....119

제8절 전쟁희생자의 포획.....120

제9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120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 121

제1절 적 전투원..... 121

제2절 부상자, 병자, 난선자..... 123

제3절 사망자..... 124

제4절 적 군의무요원..... 125

제5절 적 군중요원..... 126

제6절 적 군사목적물..... 126

제 3 장 적과의 비적대적 접촉..... 127

제1절 일방적 조치..... 127

제2절 전투중지..... 128

제3절 절차..... 128

제 4 장 전투후의 조치..... 130

제1절 군사적 조치..... 130

제2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131

제 7 편 수송

서론..... 132

제 1 장 수송행위..... 132

제1절 군수송원칙..... 132

제2절 군, 의무 및 민간인의 분리수송..... 134

제3절 군, 의무 및 민간인의 합동수송..... 134

제4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135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 136

제1절 전쟁포로..... 136

제2절 부상자, 병자, 난선자..... 137

제3절 사망자..... 138

제4절 적 군의무요원..... 139

제5절 적 군중요원..... 140

제6절 적 군사목적물..... 140

제 3 장 보급..... 141

제1절 보급원칙..... 141

제2절 의무보급..... 142

제3절 종교물의 보급..... 143

제 4 장 의무수송..... 143

제1절 의무수송원칙..... 143

제2절 육상 의무수송..... 144

제3절 해상 기타 수상 의무수송..... 145

제4절 공중 의무수송..... 146

제 8 편 후방지역

서론..... 149

제 1 장 군수기지..... 150

제1절 군수원칙..... 150

제2절 군 보급 및 정비기지..... 153

제3절 군 의무지원기지..... 154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처리..... 155

제1절 전쟁포로..... 155

제2절 부상자와 병자..... 165

제3절 전쟁포로의 사망..... 166

제4절 적 군의무요원..... 167

제5절 적 군중요원..... 168

제6절 적 군사목적물..... 168

제 3 장 민사사항..... 169

제1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169

제2절 외국인 거주자..... 171

제3절 외국 자유영역내의 민사사항..... 172

제 4 장 형사사항..... 173

제1절 전쟁범위반..... 173

제2절 사법절차..... 174

제3절 전범자의 기소..... 175

제4절 외국인 거주자의 기소..... 178

제 9 편 점령..... 179

서론..... 179

제 1 장 점령법..... 179

제1절 정의..... 179

제2절 책임..... 180

제 2 장 점령에 관한 특별규정..... 181

제1절 행정업무..... 181

제2절 민간주민의 상황..... 183

제3절 민간인의 이동..... 185

제4절 거주자에 대한 보안조치..... 186

제5절 형법관련사항..... 187

제 3 장 점령의 통제..... 188

제1절 통제원칙..... 188

제2절 점령국의 조치..... 189

제3절 점령지 당국과 주민의 조치..... 189

제 4 장 점령지에서의 전투행위..... 190

제 10 편 중립..... 192

서론..... 192

제 1 장 중립법..... 192

제1절 정의..... 192

제2절 책임..... 193

제 2 장 중립에 관한 특별조항..... 194

제1절 전투작전지역..... 194

제2절 중립영역에의 접근에 관한 일반원칙..... 195

제3절 중립영역에의 일시적 접근..... 195

제4절 교전당사국 군대의 억류..... 196

제 3 장 중립의 통제..... 198

제1절 통제원칙..... 198

제2절 중립국의 조치..... 199

제3절 교전당사국의 조치..... 200

제 4 장 중립영역에서의 전투행위..... 200

부록 I. 특수무기에 관한 특별조항

제 1 장 서론..... 202

제 2 장 금지사항..... 203

제 3 장 지뢰와 그 유사무기..... 204

제1절 정의..... 205

제2절 사용허용 조건..... 205

제 4 장 소이무기..... 206

제1절 정의..... 206

제2절 사용허용 조건..... 207

제 5 장 수뢰..... 207

부록 II. 신분증명

제 1 장 개인의 신분증명서류..... 209

제1절 신분증..... 209

제2절 인식표..... 210

제3절 내용..... 210

제4절 신분증에 관하여 권장되는 추가자료..... 211

제 2 장 식별표지..... 212

제1절 서론..... 212

제2절 종류..... 212

제3절 사용..... 214

제 3 장 식별신호..... 215

제1절 서론..... 215

제2절 의무 광선신호..... 216

제3절 의무 무선신호..... 216

제4절 의무 레이다신호..... 217

제5절 의무 수중음향신호..... 217

제6절 기타 신호..... 217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요약..... 219

역자후기..... 238

서론

1. 현대 전쟁법

무력충돌을 규율하는 각종의 국제조약은 각기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다. 주된 헤이그협약은 1907년에, 최근의 제네바협약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각각 1949년 및 1954년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및 특정 재래무기에 관한 협약은 각각 1977년과 1980년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전쟁법조약은 각기 그 시대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개념, 상황 및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현대전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전쟁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군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 국가의 책임

전쟁법에 관한 국제조약을 승인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조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그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쟁법은 모든 사태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엄밀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각 당사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때에만 가능하고 또한 그러한 나라들은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법은 각국에 있어서 전략적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 등 각국의 전략상황은 전쟁법의 실효적 준수확보에 꼭 필요한 전쟁법의 내부적 명확화와 엄밀성을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무력충돌에 민간인의 관련성이 증대함에 따라 현대의 전쟁법은 평화

시에도 이미 국가내 각종 단체나 기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3. 군대를 위한 편람(便覽)의 필요성

각국에 따라 전쟁법에 대한 접근방법 및 그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이 전쟁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책자가 없었다.

군인이 지휘계통상 자신의 위치 및 상황에 따라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항인가를 곧바로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군사교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구조에 따라 작성된 전쟁법 책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4. 이 책의 목적 및 개념

두가지 목적에서 이 책을 저술하였다.

하나는, 전쟁법에 관한 국제과정 및 국내과정에 있어서 참고서로 쓰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내에서 군인의 행위규범으로 이용되기 위함이다.

이 책은 무력충돌 및 그 규제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전략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략적 차원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쟁법의 적용은 내부적 지시 및 훈련의 문제라는 점이 강해지고 지휘관의 책임이 관련되게 된다.

전쟁법의 주요부분은 국제적 무력충돌을 다루고 있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하여는 일부의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군대는 작전 및 전투에 있어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교육하거나, 법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내적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비록 공식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지라도, 사실상 자세한 법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련된 당사국과 군대는 실제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조항들을 더욱 잘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책은 국제적 무력충돌 규제법을 주로 고찰하면서도, 비국제적 무력충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충

돌당사국'이라는 용어보다는 '충돌당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책의 기본원칙은 조약이 정식으로 무력충돌 관련당사자를 구속하느냐의 여부 및 그 충돌의 이유나 성질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국제조약에 기초한 원칙과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간에 새로이 형성중인 관행과 관습법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참모총장으로부터 하급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휘계통에 있어서 시행되어야 할 실제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정신은 행위규범의 정신과 같다. 그러므로 이 책에 의거하여 명령과 규율 및 행동을 존중하는 것은 언제나 전쟁법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념에 비추어 이 책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추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다.

5. 이 책의 구조

이 책은 10개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야는 해마다 몇차례에 걸쳐 이태리 산레모에서 개최되는 10일간의 국제인도법연구소 연수과정의 주제에 맞게 배열되어 있다(이 과정은 전쟁법에 관한 개괄적이고도 기초적인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책은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략적 차원에 있어서의 무력충돌에 대한 통제 및 관리로부터 최후의 전술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전장(戰場)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지휘계통 및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 기술하고 있으며, 전쟁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는 전장, 수송중 및 직후방지역에 있는 사람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할 조치들을 계속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점령과 중립의 특수상황을 다루고 있다.

현대전의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 해, 공군작전 및 그에 따른 전쟁법적 문제를 혼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10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용어의 정의
2. 무력충돌의 통제
3. 지휘책임
4. 지휘권 행사
5. 작전지휘
6. 전투행위수칙
7. 수송
8. 후방지역
9. 점령
10. 중립

각 분야별로 논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부내용을 중복하였다. 그러나 접근방법은 언제나 해당분야의 주요 주제에 맞추어져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아울러 여러 가지 부록을 첨부하여 이 책의 이해 및 이용을 도왔다.

6. 이 책의 이용자

이 책은 기본적으로 휘하에 참모진을 거느린 고급지휘관을 위한 것으로 조약법조항을 결들임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상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색채인쇄된 세가지 문건(지휘관을 위한 전쟁법요약, 작전행동수칙 및 훈련계획)도 아울러 각각 별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노란색으로 인쇄된 '지휘관을 위한 요약'에는 조약법에 대한 참조가 없이 작전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지휘관이 알고 실행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붉은색으로 인쇄된 '작전행동수칙'은 소대장이나 하사관 및 사병 등 하위 전술단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수칙들은 간단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상군의 증대나 기병대 또는 포대내의 훈련에 이용되거나 적절한 응용을 거쳐 해군의 소함대나 공군의 편대내의 훈련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수칙들은 모든 군인이 필수적으로 알고 실행해야 할 사항들을 밝히

고 있다.

푸른색으로 인쇄된 '훈련계획'은 피훈련자들의 실제적 필요에 적용되는 전쟁법훈련실습을 지도자가 이해하고 조직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¹⁾

7. 설명

군대란 본디 군사작전을 위하여 조직되고 훈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책에서는 "전쟁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전쟁법"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자체로서 곧바로 이해가 되며, "무력충돌법" 보다는 간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법"이라는 표현은 부연설명이 필요하고 너무 자주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용어와 혼동되기 때문이다.

조약의 참고조문이 각각의 문두(文頭)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다. 주요 조약과 그 약어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전쟁법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 참조").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표시나 약어가 주어지지 않는다.

- 근본원리에 기초한 개론적 규칙이나 관습법에 따른 규칙
- 종합이나 여러 조항의 목록
- 국가가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나 기타 조직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규칙
- 법적 규칙이나 전술상황의 논리적 결과인 행동
- 권고 내지 추천대상이 되는 행동.

1) 제작기술상의 이유로 본 역서에는 부득이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 요약" 만을 이 책의 말미에 첨부하였으며 색깔로 표시하지 않고 페이지로 표시하였음을 밝힌다 (역자).

전쟁법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

이 책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조약 및 육전에 관한 조약 등

H. III

적대행위의 개시에 관한 1907.10.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lative to the opening of hostilities. The Hague, 18 October 1907)

H. IV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의 존중에 관한 1907.10.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H. IV. R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의 존중에 관한 1907.10.18. 헤이그협약 부속서 (Annex: 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Washington

예술 및 과학 기구와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1935.4.15. 와싱턴조약 (Treaty on the protection of artistic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nd historic monuments - Roerich Pact. Washington, 15 April 1935)

G. I

육전에서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8.12. 제네

바협약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Geneva, 12 August 1949)

G. III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8. 12. 제네바협약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G. IV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 8. 12. 제네바협약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H. CP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1954. 5. 14. 헤이그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Hague, 14 May 1954)

H. CP. R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1954. 5. 14. 헤이그협약에 따른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규칙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H. CP. P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1954. 5. 14. 헤이그협약에 따른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G. P. I

1949. 8. 12. 제네바협약에 부가되고 국제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

런되는 1977. 6. 8. 제네바 의정서 - 일명 제1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Geneva, 8 June 1977)

G. P. II

1949. 8. 12. 제네바협약에 추가되고 비국제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련되는 1977. 6. 8. 제네바 의정서 - 일명 제2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I. Geneva, 8 June 1977)

2. 해전에 관한 조약 등

H. VI

적대행위 개시시 적의 상선의 지위에 관한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enemy merchant ships at the outbreak of hostilities. The Hague, 18 October 1907)

H. VII

상선의 군함으로의 개조에 관한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conversion of merchant ships into war-ships. The Hague, 18 October 1907)

H. IX

전시 함포사격에 관한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bombardment by naval forces in time of war. The Hague, 18 October, 1907)

H. XI

해전에서 나포권 행사의 일부 제한에 관한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lative to certain restrictions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apture in naval war. The Hague, 18 October 1907)

London. Decl

해전법에 관한 1909. 2. 26. 런던선언 - 서명국의 비준이 없었음 (Declaration concerning the laws of naval war. London, 26 February 1909 - not ratified by any signatory)

Oxford

교전당사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해전법. 국제법기구에 의해 채택된 1913. 8. 9. 옥스포드교범- 약칭 해전에 관한 옥스포드 교범 (The laws of naval war governing the relations between belligerents. Manual adop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 Oxford Manual of naval war-. Oxford, 9 August 1913)

London. PV

1930. 4. 22. 런던조약 IV편에 삽입된 잠수함전에 관한 1936. 11. 6. 런던프로세 버벌 (Procès-verbal relating to the rules of submarine warfare set forth in Part IV of the Treaty of London of 22 April 1930. London, 6 November 1936)

G. II

해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의 상태개선을 위한 1949. 8. 12. 제네바협약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Geneva, 12 August 1949)

3. 공전에 관한 조약 등

H. AW

법률가 위원회에 의하여 1922. 12 - 1923. 2. 헤이그에서 기초된 공전 규칙, 구속력있는 형태로 채택되지는 않았음 (Rules of air warfare. Drafted by a Commission of jurists at The Hague, December 1922-February 1923, this was not adopted in a binding form)

4. 중립에 관한 조약 등

H. V

육전의 경우에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case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H. XIII

해전의 경우에 중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in naval war. The Hague, 18 October 1907)

Havana

해상중립에 관한 1928. 2. 20. 하바나협약 (Convention on maritime neutrality. Havana, 20 February 1928)

5. 무기에 관한 협약 등

St. Petersburg

전시 400그램이하 폭발성 발사무기의 사용을 포기하는 1968. 11. 29.-

12. 11. 성 페테스부르크 선언 (Declaration renouncing the use, in time of war, of explosive projectiles under 400 grammes weight. St. Petersburg, 29 November- 11 December 1868)

H. Decl

확산탄에 관한 1899. 7. 29. 헤이그선언 (Declaration concerning explosive bullets. The Hague, 29 July 1899)

H. VIII

자동촉발기뢰의 설치에 관한 1907. 10. 18. 헤이그협약 (Convention relative to the laying of automatic submarine contact mines. The Hague, 18 October 1907)

H. XIV

기구로부터 발사무기나 폭발물의 투하를 금지하는 1907. 10. 18. 헤이그협약 (Declaration prohibiting the discharge of projectiles and explosives from balloons. The Hague, 18 October 1907)

G. BC

전시 질식가스, 유독가스 등과 세균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1925. 7. 17. 제네바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Geneva, 17 June 1925)

G. CW

과도하게 유해하거나 무차별적 효과를 가지는 일부 재래무기 사용의 금지 내지 제한에 관한 1980. 10. 10. 제네바협약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10 October 1980)

G. CW. P. I

탐지할 수 없는 파편에 관한 위 협약 의정서 - 제1의정서 - (Protocol on non-detectable fragments - Protocol I -)

G. CW. P. II

지뢰나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내지 제한에 관한 위 협약 의정서 - 제2의정서 -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 traps and other devices - Protocol -)

G. CW. P. III

소이무기 사용의 금지 내지 제한에 관한 위 협약 의정서 - 제3의정서 -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cendiary weapons - Protocol III -)

제 1 편 용어의 정의

서 론

이 편에서는 전쟁법의 기초적 정의와, 전쟁법의 군대에 대한 그리고 군대에 의한 적용문제 및 전쟁법에 규정된 사람과 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다룬다.

제 1 장 전쟁법과 군대는 군대를 위한 전쟁법과 그에 관련되는 사항의 개념, 목적, 범위, 적용 등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사람과 물건의 기본적 범위는 군사분야나 민간분야에 속하는 사람과 물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은 그 기능, 가치, 위험요소나 중요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부여되는 사람과 물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전쟁희생자는 전쟁포로, 부상자, 병자, 난선자 및 사망자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전쟁법과 군대

제 1 절 전쟁법

1. 목적 (페테스부르그 서문)

전쟁법의 목적은 전쟁의 재난을 가능한 한 많이 제한하고 경감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쟁법은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적 요구간에 조화를 이루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

2. 관습법, 조약법

전쟁법은 처음에는 확립된 관행이나 관습에 기초하여 출발하였으나(예: 선전포고, 휴전 및 항복 등), 점차 국제회의에서 채택되는 국제조약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3. 법적 규제

전쟁법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제한다.

- 1) 적대행위 일반
- 2) 군대에 의한 전투행위
- 3) 전투원의 작전중 행위
- 4) 전시 민간당국 및 민간인의 행위
- 5) 전시 사람 및 물건 특히 전쟁희생자에 대한 행위 및 대우
- 6) 점령지에서의 행정 및 질서유지 (점령법)
- 7) 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 (중립법)

4. 보충원칙 (H. IV, 서문; G.P. I, 1)

조약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간인과 전투원은 다음에서 유래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권한하에 있다.

- 1) 확립된 관습
- 2) 인도주의 원칙
- 3) 일반적인 양심의 명령

5. 국제무력분쟁에 대한 상세한 원칙

전쟁법은 일차적으로 국가간 및 국가집단간의 국제적 무력충돌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쟁법의 중요부분은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 2 절 전쟁법의 유형

6. 기원: 헤이그법계(法系)와 제네바법계

전쟁법에 관한 조약에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개의 그룹이 있다.

- 1)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헤이그협약:
 - 전투행위
 - 점령의 개념
 - 중립의 개념
- 2) 다음의 사람에 대한 보호조항이 있는 제네바협약:
 - 선전포로, 부상자, 병자, 난선자 등 무력충돌의 희생자가 된 자
 - 민간인 일반
 -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 특히 의무요원

7. 발전: 헤이그법계와 제네바법계

이러한 헤이그법계와 제네바법계간의 초기의 명확한 차이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법계간의 차이의 핵심은 전쟁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재도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헤이그법계는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지휘계통을 통하여 사실상 모든 군대요원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8. 헤이그법계

헤이그법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1899년 기본 헤이그협약, 이는 1907년 헤이그협약에 의하여 대부분 개정되고 완성되었다.
- 2) 헤이그에서 기초된 1923년 공전법규칙(空戰法規則)
- 3) 특정 무기들에 관한 갖가지 조약 (부록I 참조)

9. 제네바법계

제네바법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1864년, 1906년 그리고 1929년의 제네바협약 및 이를 개정하고 완성한 현재의
- 2) 1949년 제네바협약

10. 혼합법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의 혼합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문화재보호에 관한 1954년 헤이그협약
- 2)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제 3 절 국가의 법적 지위

11. 조약의 당사자

각국가는 그가 체결한 (“비준”이나 “승인”을 통하여) 국제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내의 번역판을 만들수 있고 일부 유보조항을 설정할 수 있다.

12. 충돌당사국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하나 이상의 국가와 적대행위에 들어가는 국가는 “충돌당사국”이다.
 그러한 국가와 그 군대는 “교전중”이다.

13. 중립국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진행중인 무력충돌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중립국”이다.

14. 조약당사자가 아닌 국가 (G. I, 2; G. II, 2; G. III, 2; G. IV, 2; H. CP, 18)

국제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도 그 조약의 조항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 국가는 조약이 기존의 법에 대하여 선언적인 것인가 또는 그 국가가 그 조약을 받아들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조약에 기속

될 수도 있다.

15. 국가의 주권

국가의 주권은 다음에 미친다.

- 1) 해당국가의 영토
- 2) 해당국가의 영해
- 3) 해당국가의 영공

16. 영해 (LS, 3 = 1982년 자마йка의 UN 해양법협약 제3조)

영해는 전통적으로 해안으로부터 3해리(장거리포의 사거리)까지 미쳤다; 오늘날은 12해리까지로 인정되고 있다.

17. 영공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된다.

18. 자연해협 (LS, 34-44)

일반적으로, 영해를 통과하는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자연해협은 선박과 항공기의 통행에 공개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특별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한다.

19. 인공운하

인공운하와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한다 (예: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20. 군도국가(群島國家): 개념 (LS, 46)

군도국가란 하나 이상의 군도나 기타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를 말한다. 군도란 섬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에는 지리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일체를 구성하거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섬들의 일부 및 그와 상호 관련있는 바다 기타 자연지형이 포함된다.

21. 군도국가: 영해 (LS, 47, 48)

영해는 일반적으로 가장 외곽에 있는 섬의 외곽끝과 수면상의 암초를 연결하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22. 군도국가: 항로와 공로 (LS, 53)
군도국가는 그 국가상에 외국 선박과 항공기의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행에 적합하도록 항로나 공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 절 전쟁법의 적용

23. 원칙 (G. I, 2; G. II, 2; G. III, 2; G. IV, 2; H. CP, 18; G. P. I, 1)
전쟁법은 동일한 조약에 가입한 국가간에 적용된다.
또한 조약의 당사국과 그 조약을 승인하고 그 조항을 적용하는 국가나 기타 교전당사국간에 적용된다.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24. 적용의 개시 (G. I, 2; G. II, 2; G. III, 2; G. IV, 2, 6; H. CP, 18; G. P. I, 3)
전쟁법은 최초의 적대행위나 저항없이 점령이 이루어 질 때부터 적용된다.
예비적 성격의 조치들은 평시에도 이미 적용된다 (예: 정보, 훈련).

25. 전쟁법의 존중 (G. I, 1; G. II, 1; G. III, 1; G. IV, 1; H. CP, 4; G. P. I, 1)
관계국가와 교전당사국은 전쟁법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쟁법은 군인, 민간인 뿐만 아니라 정부, 군대 그리고 민간당국에 의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26. 특별협정 (G. I, 6; G. II, 6; G. III, 6; G. IV, 7; H. CP, 24)
관계국가와 교전당사국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전쟁법상 부여되는 보

호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27. 권리의 불포기 (G. I, 7; G. II, 7; G. III, 7; G. IV, 8)
누구도 전쟁법이나 관계국가와 교전당사국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보장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없다.

28. 국가지위에 무영향 (G. I, 2; G. II, 2; G. III, 2; G. IV, 2; H. CP, 18; G. P. I, 4)
충돌당사국의 법적 지위는 1) 전쟁법의 적용이나 2) 전쟁법에 규정된 특별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9. 적용의 종료 (G. I, 2, 5; G. II, 2; G. III, 2, 5; G. IV, 2, 6; H. CP, 18; H. CP. R, 18; G. P. I, 3)
전쟁법은 군사작전의 전반적인 종료나 점령의 종료에 의하여 그 적용이 종료된다.
억류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이 석방되거나 송환되거나 또는 복직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종료된다.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들이 반환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종료된다.

제 5 절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요약 원칙

30. 원칙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나 국내적 무력충돌에는 일부조항만이 관련이 있다. 그러한 조항들은 사실상 모든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필수적 원칙이 요약된 것이다.

31. 보다 축약된 요약 (G. I, 3; G. II, 3; G. III, 3; G. IV, 3; H. CP, 4, 19)
보다 축약된 전쟁법의 요약은,
1) 1949년 제네바협약들 각 제3조
2) 문화재 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 제4조로 구성된다.

이들 조항은 이들 협정의 당사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분쟁의 수준이나 정도에 관하여는 명확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

32. 보다 상세한 요약: 소재 (G.P. II)
 보다 상세한 전쟁법의 요약은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2추가의정서로 구성된다.

이 제2추가의정서는 1949년 제네바협약들 각 제3조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보완한다.

33. 보다 상세한 요약: 필요한 폭력의 정도 (G.P. II, 1)
 제2추가의정서는 국내적 소요(騷擾)나 긴장보다 강한 상황에 적용된다 (예: 폭동,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행위).

34. 보다 상세한 요약: 필요한 군사적 수준 (G.P. II, 1)
 제2추가의정서는 비정부적 무장세력과 집단이
 1) 책임있는 지휘관의 지휘하에 있거나
 2) 전쟁법을 준수할 수 있거나
 3) 해당국가의 영토의 일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제를 행사할 때에 적용된다.

35. 축약된 요약과 상세한 요약의 비교 (G. I, 3; G. II, 3; G. III, 3; G. IV, 3; H. CP, 4, 19; G.P. II, 1)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1949년 제네바협약들 각 제3조와 문화재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 제4조가 1949년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보다 넓은 범위의 분쟁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앞의 두가지 조항에 따르면 이미 무력충돌에 해당하지만 제2추가의정서의 의미상으로는 아직 무력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제 6 절 전쟁법상의 군대

36. 정의 (H. IV, R, 1; G.P. I, 43)
 분쟁국가와 당사국의 "군대"는 부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모든 부대와 인원으로 구성된다.

37. 조직: 원칙 (H. IV, R, 1; H. VII, 1-6; G.P. I, 43)
 군대는 국가의 안전과 방위의 필요에 따라 설치, 조직된다.
 각 국가와 교전당사국은 그의 군대에 속하는 사람과 물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8. 조직: 어린이 (G.P. I, 77)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군대로 모집되어서는 아니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군대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39. 조직: 적국인 (H. IV, R, 23; G. III, 130)
 적국인은 자신의 국가에 적대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

40. 충돌당사국에 대한 책임 (H. IV, R, 1; G. III, 4; G.P. I, 43)
 군대의 지휘권은 그것이 속한 교전당사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1. 훈련 (G.P. I, 43)
 군대는 전쟁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부적 훈련체계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7 절 군대의 행동준칙으로서의 전쟁법

4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필요
 전쟁법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군대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이 필요하다.

군대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국내적 무력충돌 간에 행동방식에 있어서 달리 교육될 수 없다.

43. 정확하고 상세한 원칙의 필요
실제상황에 즉각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 전쟁법에서 언급되는 원칙들은 정확하고 상세하여야 한다. 비국제적인 무력충돌에 대한 요약원칙들은, 이들을 군대가 적용하려면, 보충자료가 필요한 원칙들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예컨대, 전투행위, 의무지원, 포로가 된 전투원의 대우).

44. 행위 및 행동규범
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보다 완전한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행위 및 행동규범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행위 및 행동규범은 해당 분쟁에 있어서 모든 교전당사국과 그의 군대를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군대가 정부의 군대이든 확립된 당국에 대항하는 군대이든 불문한다.

45. 이 책의 참조: 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원칙
이 책은 본래 국제적인 무력충돌을 공식적으로 규율하는 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물론 국제적 무력분쟁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부여된 기능과 활동도 사실상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하여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국제적 십자사나 유네스코의 보호활동과 같은 행동).

46. 이 책의 참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한 예외
이 책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특별히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전쟁법 조항의 요약, 무력충돌의 강화).

제 2 장 사람과 물건의 기본적 범위

제 1 절 전투원

47. 정의 (G.III,4; G.P.I,43)
"전투원" 이란 의무요원과 종교요원을 제외한 모든 군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48. 민간인과의 구별: 원칙 (G.III,4; G.P.I,44)
전투행위나 그에 대한 예비단계인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전투원은 자신을 반드시 민간인과 구별시켜야 한다. 정규 또는 이와 유사한 군대의 구성원은 통상적으로 제복에 의하여 자신을 구별시켜야 한다. 기타의 군대의 구성원은 고정적이고 인식가능하며 구별되는 표지를 부착하고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여야 한다.

49. 민간인과의 구별: 예외적 상황 (G.P.I,44)
적대행위의 성질상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구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함으로써 다음의 경우에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1) 모든 군사행위에의 참여시
2) 군사적 전개시 즉 전투가 개시되거나 공격이 가해지는 곳으로의 이동중에 그가 적의 가시권에 들어갈 때

50. 무장봉기에의 참여자
적의 진격에 직면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대규모 무장저항을 하려는 비점령지의 주민들이, 조직적인 부대형태를 갖추 시간인 없는 상황에서,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고 전쟁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전투원으로 간주된다.

제 2 절 민간인

51. 정의 (G. IV, 4; G. P. I, 50)

“민간인”이란 군대에 속하지 않고, 무장봉기에도 참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52. 의심스러운 경우 (G. P. I., 50)

민간인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운 자는 민간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53. 민간주민 (H. P. I, 50)

민간주민은 민간인인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민간인들이 아닌 개인들이 민간주민 내에 존재한다 하여 그 민간주민으로서의 성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54. 위험한 임무를 띤 언론인 (G. P. I, 79; G. P. I, Annex II)

무력충돌내에서 직업상 위험한 임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민간인이다.

제 3 절 군사목적물

55. 정의 (H. IX, 2; G. P. I, 43, 52)

군사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 1) 의무요원과 종교요원 및 그 물건을 제외한 군대
- 2) 군대나 그 물품이 위치하고 있는 설치물, 건물 및 진지 (예컨대 진지, 병영, 창고)
- 3) 기타 목적물로서 성질, 위치, 목적 또는 사용에 의하여 군사 작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과 그 시간 및 상황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중립화가 결정적으로 군사적 이익을 주는 것.

56. 군사목적물 내에 있는 민간인 (H. IX, 2; G. P. I, 50-52)

군사목적물은 그 안에 민간인이 있다 하여도 여전히 군사목적물이다. 그러한 목적물 내에 있거나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민간인은 그 목적물이

노출됨으로써 받는 위협을 함께 부담한다.

제 4 절 민간목적물

57. 정의 (G. P. I, 52)

“민간목적물”이란 군사목적물이 아닌 모든 물건을 말한다.

58. 예외 (G. P. I, 52)

통상적으로는 민간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군사적 상황에 따라 군사목적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방어자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이용됨으로써 공격자의 공격목표가 되는 가옥이나 교량).

59. 의심스러운 경우 (G. P. I, 52)

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예컨대, 예배장소, 집이나 기타 주거지, 학교)이 군사목적물로 이용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목적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3 장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제 1 절 목적

60. 원칙

전쟁법은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61. 군사분야 (G. I, 19, 24, 35, 36; G. II, 22, 27, 36, 37; G. P. I, 8, 12)

군대내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에 관한 업무는 군사작전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 1) 군사의료지원

2) 군사종교요원
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물건은 그 자체로서 명백한 전투원이나 군사목적적 지위를 상실한다.

62. 민간분야 (G. IV, 18, 20, 21, 22; H. CP, 4, 8; G. P. I, 8, 12, 15, 53, 56, 60-62)

민간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1) 다음과 같은 기능의 정상적 수행

--민간의무지원

--민간의무지원대 및 민방위대의 종교요원의 종교활동

--민방위

2) 문화재나 예배장소에 대한 피해의 방지

3) 다음의 경우,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위협의 방지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댐, 제방, 원자력발

전소)에 대한 공격을 통한 다수의 민간인에 대한 위협

--비무장지대내의 민간인에 대한 위협

제 2 절 군 의무지원

63. 정의: 의무 (G. P. I, 8)

“의무”란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색, 수집, 수송, 진단, 간호하거나 질병의 예방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64. 정의: 의무요원 (G. I, 24; G. II, 36, 37; G. P. I, 8)

“의무요원”이란 의무활동이나 의무시설 및 의무수송업무에 종사하도록 배타적으로 임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65. 정의: 의무시설 (G. I, 19; G. II, 23; G. P. I, 8)

“의무시설”이란 의무목적에만 배타적으로 임무가 부여된 시설을 말한다.

위 용어는 특히 병원이나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그와 유사한 시설,

수혈센터, 예방의학센터나 기구, 의무수송장소, 의무창고 및 그와 같은 시설의 약국이나 처방점포를 포함한다.

66. 정의: 병원지대나 지구 (G. I, 23; G. I, Annex I; G. IV, 14; G. IV, Annex I)

“병원지대나 지구”란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부상자나 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병원지대나 지구는 수용능력이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모든 가능성에 비추어 적대행위의 중요한 표적이 되는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쟁의 발발과 지속중에 관계당사자는 각자가 설정한 병원지대나 지구를 상호 인식시키는 데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67. 정의: 의무수송 (G. I, 35; G. II, 27; G. P. I, 8)

“의무수송”이란 부상자, 병자, 난선자나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과 의료자재에 대한 육상, 해상 또는 공중의 수송을 전담하는 업무를 말한다.

68. 정의: 병원선 (G. II, 22, 24, 26)

“병원선”이란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지원, 간호, 수송하는 업무를 특별히 전담하기 위하여 건조되고 장비를 갖춘 배를 말한다.

69. 정의: 의무자재 (G. I, 33; G. P. I, 14)

“의무자재”란 부상자나 병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무지원과 간호를 전담하는 모든 자원과 의무장비 기타 보급품을 말한다.

70. 임시임무 (G. P. I, 8)

“임시의 의무요원, 설비, 수송 및 자재”란 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부여된 의무목적의 임무를 말한다 (예컨대 후송기간 동안).

71. 임시의무요원 (G. I, 25; G. P. I, 8)

“임시의무요원”이란 필요한 경우에 병원당직, 간호원 또는 들것 보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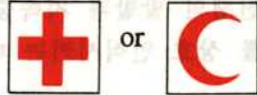
반병으로도 충당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전투원을 말한다.

72. 민간 의무지원, 민간 부상자, 병자, 난선자 (G. I, 22; G. II, 35; G. P. I, 8)

전쟁법은 군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그리고 군대의 부상자, 병자, 난선자와 민간의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73. 식별표지: 원칙 (G. I, 38-44; G. II, 41-45; G. P. I, 18; G. P. I, Annex I)

의료기관의 식별지는 백색 바탕에 적색 십자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백색 바탕에 적색 신월(新月)로 한다.



위 식별표지는 교전당사자의 책임하에 사용된다. 위 표지는 전술적인 상황이 허용하는 한, 크고, 눈에 띄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예컨대 야광이나 불꽃으로 볼 수 있도록).

74. 식별표지: 병원선 (G. II, 43; G. P. I, 22, 23)

모든 병원선의 외부는 백색이어야 한다. 식별표지의 적색은 진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야간이나 어두울 때에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빛을 발하여야 한다.

75. 식별신호 (G. P. I, 18; G. P. I, Annex I)

식별표지와 더불어 교전당사자는 식별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는 우선적으로 의무용 항공기에 채택된다. 그러한 식별신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불빛 신호(푸른 빛을 발하는)
 - 2) 무선신호
 - 3) 보조탐색레이다(SSR) 시스템
- 무선신호는 의무용 항공기와 적의 전략지휘부 사이에 교신을 허용한

다.

76. 무기 (G. I, 22; G. II, 35; G. P. I, 28)

의무요원은 자기자신이나 자기의 책임하에 있는 부상자나 병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용 무기로 무장할 수 있다.

77. 경호 (G. I, 22)

의무시설과 의무수송수단은 감시병, 보초 또는 경호병에 의하여 경호될 수 있다.

제 3 절 민간 의무지원

78. 원칙 (G. P. I, 8, 12, 13, 15)

전쟁법은 군대 및 민간 의무지원에 대하여 그리고 군대 및 민간 부상자, 병자, 난선자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군 의무요원, 시설 및 수송수단에 관한 전쟁법 조항들은 그에 상응하는 민간 의무지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에 관해 상세한 것은 본절에서 보는 바와 같다.

79. 민간 의료시설과 수송수단

(G. I, 27; G. II, 24, 25; G. IV, 18-22; G. P. I, 9, 12)

민간 의료시설과 수송수단은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교전당사국에 속할 것
- 2) 교전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승인되거나 허가되었을 것
- 3) 관계당사국의 허가를 얻어 교전당사자 일방의 통제하에 있을 것

80. 군대의 부상자, 병자, 난선자 (G. IV, 19; G. P. I, 8)

민간 의료요원, 시설 및 수송수단은 민간인 뿐만 아니라 군대의 부상자, 병자, 난선자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민간 또는 군대의 사람과 물건의 신분상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 대우가 다르다).

제 4 절 종교요원과 종교물

81. 정의 (G. I, 24; G. II, 36, 37; G. P. I, 8)
"종교요원"이란 군복과 같이 전적으로 성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소속된 군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 1) 군대
 - 2) 의무기관
 - 3) 민방위대
- 위와 같은 종교요원의 소속은 임시적일 수 있다.

82. 군 또는 민간 종교요원 (G. I, 24; G. II, 35; G. IV, 19; G. P. I, 8)
전쟁법은 군대와 민간의 종교요원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관계자들의 신분상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포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대우가 다르다).

83. 의무요원과 동일한 지위 (G. I, 24; G. P. I, 15)
의무요원에 관한 조항은 종교요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4. 종교물 (G. III, 33, 72; G. IV, 58)
"종교물"이란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 물건과 용품(예: 책과 봉헌물) 및 군 종교요원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예: 수송수단).

제 5 절 민방위

85. 정의 (G. P. I, 61)
"민방위"란 민간주민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86. 임무 (G. P. I, 61)

전쟁법에 의하여 부여된 특별한 민방위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대피
- 3) 대피소관리
- 4) 등화관제조치의 관리
- 5) 구조
- 6) 의료 (응급조치 포함) 및 종교활동
- 7) 소화작업
- 8) 위험지역의 탐사 및 표시
- 9) 오염물 제거 및 유사한 보호조치
- 10) 비상숙소 및 물자의 공급
- 11) 이재지역(罹災地域)에 있어서의 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 12) 필수불가결한 공익시설물의 긴급보수
- 13) 사망자의 긴급처리
- 14)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건의 보존상의 지원
- 15) 계획 및 조직 등 상기한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보충적 활동

87. 요원 (G. P. I, 61)
"민방위요원"이란 민방위임무나 민방위시설의 운영 및 민방위수송에만 배속된 요원을 말한다.

88. 시설 (G. P. I, 61)
"민방위시설"이란 민방위임무에만 배속된 시설을 말한다.

89. 수송수단 (G. P. I, 61)
"민방위 수송수단"이라 함은 민방위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사람과 목표를 수송하는 업무만 배속된 수송수단을 말한다.

90. 허가 (G. P. I, 61)
민방위 요원, 설비 및 수송시설은 교전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

여 조직되고 허가되어야 한다.

91. 식별표지 (G.P.I, 66; G.P.I, Annex I)
민방위의 식별표지는 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으로 한다.



위 식별표지는 교전당사국의 책임하에 사용된다.
위 표지는 크고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92. 식별번호 (G.P.I, 66)
식별표지외에도 교전당사국들은 식별번호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93. 무기 (G.P.I, 65)
민방위요원은 자기방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개인용 무기로 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육상전투가 개시되거나 개시될 예정인 지역에서는, 교전당사국은 민방위요원과 전투원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무기를 권총으로 제한한다.

94. 군당국과의 협력 (G.P.I, 65)
민방위요원과 군대요원은 민방위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할 수 있다. 민방위임무는 군사당국의 지시나 통제하에 수행될 수 있다.

95. 전투원과 군부대 (G.P.I, 67)
전투원과 군부대는 영구적으로 민방위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법적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 경우 그들은 민방위표지를 명확하게 게시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활동도 민방위임무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 6 절 문화재 및 예배장소에 관한 원칙

96. 적용분야 (G.P.I, 53)
이 절은 다음의 물건에 적용된다.

- 1) 고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 2) 문화재적 가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중요한 종교적 봉헌물

97. 원칙 (G.P.I, 53)
인류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및 예배장소는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그들에 대한 공격면제는 문화재로서 표시된 바에 어긋나게 철회되지 아니한다.
그들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자명한 것으로서 별도의 증명수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 7 절 표시된 문화재

98. 적용분야 (H. CP, 1)
이 절은 종교적, 문화적 성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문화적 가치 등을 나타내는 물건에 적용된다.

99. 정의: 일반적 보호 (H. CP, 1)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란 모든 인류의 문화적 유산에 대하여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1) 건축이나 예술 또는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적 장소; 전체적으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건물집단
- 2) 박물관, 대규모 도서관, 옛기록 보관소, 문화재피난소 등과 같이 동산(動産)문화재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물
- 3) 대규모의 부동산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센터

100. 정의: 특별한 보호 (H. CP, 8)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란 예외적인 가치를 가지는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1) 문화재 피난소
 - 2) 부동산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센터
 - 3)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는 기타 문화재
-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는 숫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01. 정의: 요원 (H.CP, 15)
 “문화재 요원”이란 문화재의 보호와 안전에 종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102. 정의: 수송수단 (H.CP, 12, 13)
 “문화재 수송수단”이란 특별한 보호하에 있는 문화재의 운반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수단을 말한다.

103. 식별표지: 원칙 (H.CP, 16)
 문화재의 식별표지는 청색 및 백색으로 이루어지는 방패모양의 문양으로 한다.
 위 식별표지는 교전당사국의 책임하에 사용된다.
 위 표지는 크고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104. 특별표지: 하나의 표지 (H.CP, 17)
 다음의 사람과 목표은 하나의 표지로 표시될 수 있다.

- 1) 문화재요원
- 2)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



105. 식별표지: 세 개의 표지 (H.CP, 17)
 다음의 목표는 세 개의 표지로 표시될 수 있다 (삼각형태가 모여 하나를 이루는 표지).

- 1)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
- 2) 문화재 운송수단



106. 경호 (H.CP, 8)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를 경호할 임무가 부여된 요원은 개인용 소

무기로 무장할 수 있다.

제 8 절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

107. 정의 (G.P.I, 56)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이란 그에 대한 공격으로 위험한 물리력이 방출되고 그 결과 민간주민에게 극심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댐, 제방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108. 보다 상세한 협정 (G.P.I, 56)
 교전당사국들은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규정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추가적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된다.

109. 식별표지 (G.P.I, 56; G.P.I, Annex I)
 위험스런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에 대한 식별 표지는 동일 축선상에 세개의 밝은 오렌지색 원으로 한다.



위 식별표지는 교전국의 책임하에 사용된다.
 위 표지는 크고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110. 방어시설: 원칙 (G.P.I, 56)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물에 대한 방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방어시설은 허용된다.

111. 방어: 무기 (G.P.I, 56)
 위험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방어하기 위한 무장은 오로지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무기만으로 제한된다.

제 9 절 비무장지대

112. 정의 (G.P.I, 60)

“비무장지대”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지역을 말한다.

- 1) 이동무기와 이동군사장비 및 모든 전투원이 철수되고,
- 2) 고정적인 군사시설이 적대행위로 사용되지 않으며,
- 3) 당국이나 주민에 의한 적대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 4) 군사적 노력과의 연계활동이 종료될 것.

113. 필수적 협정 (G.P.I, 60)

비무장지대의 지위는 관계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다. 위 협정은 전쟁의 발발후 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체결될 수 있다.

114. 군사작전의 제한 (G.P.I, 60)

비무장지대에 대한 군사작전의 확대가 위의 협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115. 지역의 한계 (G.P.I, 60)

위 협정은 비무장지대의 한계에 관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고 기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그 감시의 방법도 설정하여야 한다.

116. 임시 식별표지 (G.P.I, 60)

비무장지대를 통제하고 있는 당사국은 직접적 관련국과 합의한 바와 같은 식별표지로 비무장지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전쟁희생자

제 1 절 전쟁포로

117. 정의 (H. IV. R. 4; G. III, 4; G. P. I, 44)

“전쟁포로”란 일반적으로 적대당사국의 수중에 들어간 전투원을 말한다.

118. 군 의무요원과 종교요원

(G. I, 24, 25, 28, 29; G. II, 37; G. P. I, 43, 44)
전투원이 아닌 군의 의무요원과 종교요원은 전쟁포로가 되지 아니한다. 전투원인 임시의 군 의무요원은 전쟁포로가 된다.

119. “주민봉기” 참가자 (H. IV. R. 2; G. III, 4)

전투원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주민봉기”에 참가한 자는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120. 군대를 수행(隨行)하는 사람 (G. III, 4)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그 수행이 허가된 사람 (예: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은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121. 민간 항해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G. III, 4)

선장, 수로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한 충돌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않는 자는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122. 전쟁포로에 대한 일반적 책임 (G. III, 4)

전쟁포로는 적대당사국의 수중에 있는 것이지 그들을 체포한 개인이나 군부대의 권력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 2 절 부상자, 병자, 난선자

123. 부상자와 병자: 정의 (G. I, 12, 13; G. II, 12, 13; G. P. I, 8)

“부상자”와 “병자”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외상, 질병 기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불구로 인하여 의료지원 또는 가료가 필요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24. 부상자와 병자: 포함개념 (G.P.I,8)
부상자와 병자라는 개념에는 입산부, 신생아 및 허약자나 임부와 같은 즉각적인 의료적 지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자를 포함한다.

125. 난선자: 정의 (G.II,12; G.P.I,8)
"난선자"란 군인 또는 민간인을 불문하고 본인 또는 그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영향이 미치는 재난의 결과로 해상 또는 기타 수역에서 조난을 당한 자로서 적대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선자로서의 지위는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126. 난선자: 수색
난선자는 적절한 인식수단을 통하여 수색가능한 상태로 놓여질 수 있다 (예: 무선표지를 갖춘 비상장비).

제 3 절 사망자

127. 원칙 (G.I,17; G.II,20; G.P.I,32)
사망자에 관한 전쟁법의 조항은 친척들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 가족의 권리에 기초한다. 그러한 조항들은 또한 사망자의 유해, 유골 및 묘지에 관한 사항도 취급하고 있다.

제 2 편 무력충돌의 통제

서 론

이 편에서는 무력충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괄적인 전술적 개념과 그에 따라 취해질 조치에 관하여 다룬다.

제 1 장 충돌의 전개는 평화로부터 관계당사국의 인원 및 전투수단의 증강을 통한 전쟁으로의 발전 및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충돌의 소강상태로의 진전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평화시의 대비조치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져야 할 전략적, 시행적 및 행정적 조치들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무력충돌중의 통제는 충돌을 통제하에 두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시행적, 행정적 조치와 각종 범주에 속하는 사람과 물건에 부여되는 보호 그리고 중간국가와 중립국가의 기여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무력충돌후의 조치는 정상상태로의 복구와 전쟁희생자를 위한 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충돌의 전개

제 1 절 무력충돌의 개시

129. (전통적인)국가간 전쟁의 공식적 개시(H.III,1)

전통적으로 무력충돌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전경고(事前警告)에 의하여 개시된다.

- 1) 선전포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선언; 또는
- 2) 조건부 선전포고의 최후통첩

130. (근대적인)비공식적 개시(G.I,2,3; G.II,2,3; G.III,2,3; G.IV,2,3; H.CP,18,19; G.P.I,3; G.P.II,1)

다음과 같이 전쟁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으로써 무력충돌은 개시된다.

- 1) 비국제적인 무력충돌
- 2) 국제적인 무력충돌

제 2 절 무력충돌의 중대

131. 원칙

무력충돌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중대된다.

- 1) 개입되는 당사국 및/또는 국가
- 2) 개입되는 군대
- 3) 사용되는 전술 또는 전투수단

무력충돌의 상승은 상기한 일부 또는 전부의 분야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

132. 중대, 감소

충돌은 그 강도의 중대 또는 감소에 따라 전개될 수 있다.

충돌은 한 분야에서는 중대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감소되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133. 국내적 무력충돌의 일반적인 최소 성립요건

(G.I,3; G.II,3; G.III,3; G.IV,3; H.CP,4,19)

국내적 무력충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 국제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만 충족되면 된다.

1949년의 제네바협약들에 공통되는 제3조와 문화재보호에 관한 1954년의 헤이그협약 제4조가 그러한 상황에 적용된다.

134. 국내적 무력충돌의 제2의정서 상의 최소 성립요건(G.P.II,1)
1949년 제네바협약 제2의정서 상의 국내적 무력충돌을 구성하고 그 의정서를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 1) 폭동이나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이, 내부혼란이나 긴장 상황 이상의 최소한의 폭력행위 강도(強度)와
- 2) 책임있는 지휘하에 있으며 전쟁법을 존중할 능력이 있는 최소한의 군대조직 및
- 3)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토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135. 국제적 무력충돌의 성립에는 최소요건이 불필요

(G.I,2; G.II,2; G.III,2; G.IV,2; H.CP,18; G.P.I,1)

국제적 무력충돌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폭력이나 전투의 강도, 군사조직 및 영토의 통제 등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단순히 저항도의 전투행위만 존재하거나 전혀 전투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 영역에로의 소규모 침범이나 실제 전투가 수반되지 않는 선전포고 기타 유사한 선언만으로도, 그리고 저항을 받지 않는 침해의 경우에도 국제적 무력충돌은 성립한다.

136. 관계 당사자 및/또는 국가

무력충돌은 그 전 기간에 걸쳐 전적으로 국내적일 수 있는 바, 이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다.

처음에는 비국제적인 무력충돌이었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점증하는 지원(예컨대, 처음에는 단순한 보급품에서 나중에는 전투원이나 기타 완전한 전투장비를 갖춘 부대의 지원)을 통하여 "국제화된 국내적 무력충돌"이 될 수 있고, 상이한 국가의 군대가 서로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국제적 무력충돌이 될 수도 있다. 무력충돌은 두개국가 이상의 사이에서 개시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제적 무력충돌이다.

137. 개입되는 군대

무력충돌은 기존군대중 소규모만이 개입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내적 분쟁에 있어서 경찰형태의 군대를 소규모 지역에 투입시키는 것, 국제적 무력분쟁에 있어서 국경지역에만 한정시켜 전투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전국적 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정지역내에서 고립적으로 작전하는 소규모 기동타격대나 정찰대의 운영).

처음에는 소규모 충돌로 개시된 무력충돌이라 할지라도 전투수단의 증강이나 심지어 전군동원 등의 사태로 인하여 고강도의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무력충돌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개시되어 전군이 개입될 수도 있다.

138. 사용되는 전술 및 전투수단

전술 및 전투수단은 통상 개입되는 군대에 따라 좌우된다. 보다 작거나 가장 작은 단위부대는 단순한 전술 (예컨대 순찰, 특공 또는 유격전술)과 전투수단 (예: 경량 보병무기)을 사용한다.

군대의 개입이 확대되고 (숫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분쟁지역이 확장되면 전술이나 (예: 보다 대규모의 보병부대나 육해공 합동작전에 이르기까지) 전투수단 (예: 포병이나 기갑, 육상 해상기지로부터의 화력지원, 지원무기의 확대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139. 전투영역으로서 개입이 허용되는 최대치

군사작전은 1) 교전국들의 전지역이나, 2) 그 영해 및 영공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140. 전투영역으로의 개입이 금지되는 영역 (H.V, 1, 2; H. XIII, 1, 2)

군사작전은 1) 침범할 수 없는 중립국의 전국적 영역이나, 2) 특별한

국제적 규제하에 있는 기타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절 무력충돌의 감소 및 종료

141. 무력충돌의 감소

중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력충돌은 당사자나 당사국, 군대, 전투수단 및 전투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142. 휴전 (H. IV, R, 36)

휴전이란 교전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군사작전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휴전은 전면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휴전기간이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전당사국은 휴전조건에 따라 사전의 경고를 거쳐 언제든지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일방 교전당사국이 휴전위반을 하는 경우에 타방은 이를 비난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즉각 적대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

143. 적극적인 적대행위의 종료

(H. IV, R, 35; G. IV, 6; G. P. I, 3; G. P. II, 2)

적극적인 적대행위는 1) 교전당사국간의 공식합의(예: 항복)나, 2) 군사작전의 전반적인 종결에 의하여 종료된다.

144. 전쟁의 종료

전쟁은 평화조약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이는 휴전후에 발생할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제 2 장 평화시의 대비조치

제 1 절 전략적 조치

145. 원칙 (G. I, 45, 47; G. II, 46, 48; G. III, 127; G. IV, 144; H. CP, 25; G. P. I, 80)

모든 국가는 전쟁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가능한 무력충돌을 예상하여 예비조치를 취해야 한다.

146. 평화적 행동

국가내에서는 평화적인 행동이 장려되어야 한다(예: 명확한 국가안보정책, 도발적인 조치나 행동의 자제).

147. 예방조치

국가의 예방조치는 1) 무력충돌의 발발을 피하고, 2) 타국간 또는 자국내에서의 무력충돌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148. 위기관리

적절한 위기관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에는 세가지 전형적인 행동유형이 있다.

- 1) 적대단체나 집단간의 직접적인 협상
- 2) "알선(斡旋)"을 제공하는 제3국(중간자)과의 협력 (예: 외교관, 기타 적절한 사람의 지원, 조정, 화해 또는 조사기관)
- 3) 중재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제3자의 분쟁해결

149. 분쟁상태의 밖에 있는 것

적절한 정책은 분쟁상태의 밖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중립상태에 있는 국가는 1) 외부(예: 중립선언을 통하여) 및 2) 내부(예: 중립적 지위를 특히 그 군대에 확립함으로써)에 대하여 그 자신의 지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150. 중립과 전쟁의 분계점

국가의 전반적인 안보정책은 1) 중립 즉 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와, 2) 전쟁 즉 단순한 중립의 위반을 넘어 수자나 크

기에 있어서 중요한 작전으로서 통합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무력충돌에의 참가에 해당하는 것 사이에 분계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군대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행동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해결방법도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국가 전체적으로는 공식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육지나 해상 또는 공중에서 중립국이, 사실상 전쟁형태의, 필요작전을 수행하는 것).

제 2 절 시행조치

151. 원칙 (G. I, 45, 47; G. II, 46, 48; G. III, 127; G. IV, 144; H. CP, 25; G. P. I, 80, 83)

예비적 시행조치는 특히 1) 군대와 민간주민에게 전쟁법을 알게 하는 것과, 2) 무력충돌의 경우에 조직적, 시행적 절차들이 전쟁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152. 국내법의 제정 (G. I, 48, 49; G. II, 49, 50; G. III, 128, 129; G. IV, 145, 146; H. CP, 26, 28; G. P. I, 84, 85)

전쟁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법률이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예: 권한있는 당국의 설치와 그 권한의 제한금지, 전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153. 번역 (G. I, 48; G. II, 49; G. III, 128; G. IV, 145; H. CP, 26; G. P. I, 84)

전쟁법 전문(全文)의 공식번역문과 그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국내법령은 타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154. 교육 (G. I, 47; G. II, 48; G. III, 127; G. IV, 144; H. CP, 25; G. P. I, 80, 83)

전쟁법과 그 시행의 감독을 포함한 준수보장을 위하여 교육 및 지시가 행해져야 한다.

155. 자격있는 요원 (G.P.I, 6)
전쟁법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요원이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56. 군대내의 법률고문 (G.P.I, 82)
전쟁법의 적용에 관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지휘관에게 필요시 조언할 법률고문이 확보되어야 한다.

157. 국가포로정보국 (G. III, 122; G. IV, 136)
각 국가에는 자국의 권력내에 있는 포로 및 외국 민간인에 관한 정보의 접수와 전달을 위하여 포로정보국이 마련되어야 한다.

158. 분묘등록기관
각 국가에는 매장 및 분묘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골의 보존을 위하여 분묘등록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관은 포로정보국과 병합되어 질 수 있다.

159.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에 관한 일반론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식별표지와 식별신호의 사용을 위하여 기준과 권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160. 특별히 보호되는 문화재 (H. CP, 8; H. CP, R, 12)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문화재는 유네스코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특별히 보호되는 문화재에 관한 국제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161. 각국 적십자사 (G. I, 26, 44; G. II, 24; G. IV, 30; G. P. I, 6)
무력충돌시 국내 적십자사나 기타 지원단체의 정확한 역할과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은 미리 설정되어야 한다 (예: 군대내의 지원, 의료수단, 식별표지의 사용, 구호 등).

162. 시행문서 (G. I, Annex II; G. II, Annex; G. III, Annex IV, A-E;

G. IV, Annex III; H. CP, R, Annex; G. P. I, Annex I, II)

신분확인을 위한 시행문서 및 전쟁포로와 민간수용자에 관한 각종 서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 체포카드, 수용카드, 사망통고서, 송환증명서, 통신카드 등).

163. 신분증 (G. III, 17; G. III, Annex IV, A)
전쟁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분증이 부여되어야 한다. 위 신분증은 6.5 x 10 cm의 크기로 2부가 발행되어야 한다.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증은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다.

164. 인식표 (G. I, 16; G. II, 19)
전쟁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식표가 부여되어야 한다. 인식표는 이중으로 만들어 질 것이 권고된다. 그리하여야 사망의 경우에 한쪽은 시체에 남겨두고 나머지 한쪽은 문서화 및 기록을 위하여 후방지역으로 보내질 수 있다 (이중인식표가 아니라도 단일인식표 두개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165. 관련되는 전쟁법조약의 전문 (G. III, 41; G. IV, 99)
수용소에는 적절한 언어로 된 전쟁법 전문이 비치되어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1) 전쟁포로수용소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집이, 2) 민간인 수용소에는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집이 각 비치되어야 한다.

166. 평화시 기술수단의 전시에의 채택
평화시에 전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바다나 공중의 항해지원과 통신안전 및 구조체계가 전시에 도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